

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

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

상호 또는 성명 <i>Trade Name or Applicant</i>	Fisher-Rosemount Systems, Inc.
기기 명칭 <i>Equipment Name</i>	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)
기본모델명 <i>Basic Model Number</i>	475
파생모델명 <i>Series Model Number</i>	
인증번호 <i>Certification No.</i>	KCC-CMI-FR2-475 (A)
제조사/ 제조국가 <i>Manufacturer/ Country of Origin</i>	R.STAHL HMI Systems GmbH./독일
형식기호 <i>Type Identification</i>	LARN8-IO2F2402/2480TR0.001F1D79
인증연월일 <i>Date of Certification</i>	2011년(Year) 02월(Month) 09일(Date)
기타 <i>Others</i>	

위 기기는 「전파법」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, Article 58-2 of Radio Waves Act.

2011년(Year) 02월(Month) 09일(Date)

전파연구소장

*Director General of Radio Research Agency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*

*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"적합성평가표시"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.
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* 진위여부는 www.ekcc.go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복사본은 상단 복사방지마크의 '원' 또는 '본' 글자가 사라집니다.





<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부착 및 변경신고 의무사항 안내>

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은 모든 기기는 “전파법” 및 “전기통신기본법”에 따라 반드시 인증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,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의 회로, 외형, 모델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 유통·판매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전파법 제 90조” 및 “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”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인증취소 대상이 되오니, 자세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